
제1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1957년7월16일(단기4290년) 상오10시25분

의사일정

1. 제4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4. 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서울특별시행정기구축소에관한건의안
6. 청소및接客영업사무관장임시조치에대한환원건의안
7.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제정의건
8. 오물수거대행요청청원서심의의건
9. 서울특별시중양도매시장업무규정조례개정안

부의된안건

1. 제4차회의록통과 2면
2. 보고사항 2면
3. 부정도량형기구단속에관한건 3면
4. 경찰국청사병합에대한건 9면
5.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6면
6. 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2면
7. 서울특별시행정기구축소에관한건의안 45면
8. 청소및接客영업사무관장임시조치에대한환원건의안 68면

(10시 25분 개의)

○의장 김진용; 재석의원 27인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회의록낭독

1. 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신용석;

(제4차회의록낭독)

○의장 김진용;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신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상흡 의원 박승목의원 두 의원을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 사무취급조례개정안 송치의 건입니다.

본건은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송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교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예비지출 승인요청서 2건을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여자고등학교에 부속건물 개축에 의한 철거에 건입니다.

본건은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이를 문교재정 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사와 도급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운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의 건입니다.

이것을 재정위원회 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각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 드렸으며 이것은 소관 위원회에서 입안제출된 고로 재차심사부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마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써 2, 3일전에 긴급동의로 상정된 것을 간단히 처리하고 사건을 속히 처리하니 위해서 제일 첫째로 부정 도량형기구 단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김규원의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정도량형기구단속에관한건

○김규원 의원; 동의안으로 별써 12일날 제출했는데 여러분께 따로 유인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하시고 부정 도량형단속에 관하여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싶이 시내에 지금 서울이라든지 혹 되라든지 그런 것이 부정 도량형이 많은데 개중에는 혹 일부로 속이려는 것은 아닌것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고의로다가 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고기를 한번 부주간에서…… 사서 집에가서 정확한 저울로 한번 달아보면 한근에서 두양중 20충준다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에는 도량형을 취척하기 위해서 국이 따로 독립되어 있다는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상공과안에 이 도량형기구를 취척한 한다는 이러한 이런 그 명목으로다가 신모라는 이런 분이 권위자라고 봅시다마는 이 역시 면목상 그런 자리만 있다고 할뿐이지 도량형을 갖다가 취척하여 다닌다든지 이런일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번씩 각 구청단위로 그 도량형기 가진 사람을 가지고와서 검사를 맡어가지라 1년에 한번씩 이런 단속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지로 장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량형기를 조사해보면 상당히 불량품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종래와 같은 이런 미약한 어느 형식적인 이런 단속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서울시민이 가령 무슨 물건을 산다든지 하면 이러한 정확한 수량을 사도록 이것을 사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민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산업국 상공과에 있는 도량형기를 단속을 하고 여기에서 대개 어느정도 이 불량 도량형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서 이 종래와 같은 이러한 방법을

쓰지말고 좀더 적극적인 시정을 할 방침을 취하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한후에 나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무슨 결정을 짓고저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산업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산업국장; 이 도량형 행정에 대해서는 이행정은 시민의 경제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 용량이라든지 이 밀도를 정확히 유지하는 지도에 또는 이 기물을 소유한 사람이 부정사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정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지금 제안자이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행정체가 서야 될것인데 현재 도량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상공과에 전임직원이 단 한사람밖에 없고 각구청에는 전임직원이 한 사람도 배치가 되어있지 못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이 도량형을 취급하는 사무라든지 이것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기술을 습득한 직원이 아니면 이 사무를 다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 시예산 50만환 금고보조예산이 20만환에서 1년에 겨우 70만환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중요법에 비추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행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예산조치도 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할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로서 각 구청에 있는 직원을 한사람씩 모여가지고 단기 기술훈련을 시킬 이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중에는 이 도량형부터 규정에 의해서 일종검사와 2종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종검사는 기물 자체를 대한 검사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8월중에 이 기물검사를 일제히 실시할 수 있도록 단기 강습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후에 9월달에 들어가서는 2종검사 소위 부정도량형에 대한 상인의 단속입니다.

이것은 취체관서인 경찰과 연락해서 가능한한 한 지역에 걸쳐가지고 이것은 일제히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저희가 고충을 느끼는 것은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정기구가 각종 각양의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재 설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상공부 중앙 도량형연구소에도 판정할 수 있는 검사기구가 설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 대단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량형 취체문제에 있어서는 각구청의 직원을 우선 단기훈련을 시켜가지고 동별로 8월과 9월에 공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여기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최인호 의원; 방금 도량형기의 행정에 대해서 김규원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주무당국인 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까라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서울시의 자치지역에 사는 주민의 일절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도량형기가 안되면 안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저로서는 산업국장님한테 듣고저 하는 것을 서울시내에 이 도량형기에 대한 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도량형행정을 실시해서 불량도량형기가 적발되었으며 또한 앞으로에 있어서 각구 단위로 1명씩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지행동으로서 이 행정에 임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세가지를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용;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지금 최의원께서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도량형기가 몇대가 되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실은 오늘 이런 긴급동의가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통계를 물어 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현재 이 과에서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못잡고 있습니다.

대략 추정하건데는 이 도량형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수백종에 공하고 있는데 대수로 약 5만을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1종검사와 2종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있어서 동 수검한 점수가 1만4천백개 정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부정으로 인정해서 폐기처분을 시킨것이 약 1천2백50점 기타 이것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선처분을 내린것이 1천79점 입니다.

또 현재에 이 기구로 각구청직원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아직까지 행

정체가 서있지 못하고 또 예산도 여기에 수반되지 못하고 기타 검사기구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연해서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으로서의 얘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단시일 내에 이러한 기구조절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질문있어요?

(「의장」하는이 있음)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위원장께서 여러가지 사회현실로 보아서 그냥 소임해 둘수 없는 것으로 이 기회에 이것을 질의하신 것같은데…… 지식이 빈약하고 또 집행부…… 행정부의 답변이나 별 신통한 얘기가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도량형기가 나쁘다 도량형기는 나쁘지 않고 이 근수를 속인다든가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중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논하지 말고 집행부 당국도 이렇게 그 문제는 이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며 여러분께서 의견이 계시다면 모르지만 별반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재청부터 오청까지 있음.)

○의장 김진용; 그러면 이것으로서 종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긴급동의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명은 경찰국청사 병합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설명 나와서 해주세요.

4. 경찰국청사병합에대한건

○조영석 의원; 본의원이 언권을 긴급동의로서 제안을 하고 의원동지 여러분이 그다지 심각한 흥미를 갖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민주행정의 발전을 기하고 또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이끌어 갈려면 이러한 문제를 등한히 해서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바에 의해서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경찰이 우리나라의 현재에 제도는 사실상 국립경찰제도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면을 들쳐본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를 지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추측하여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별로 보면 각지방의 도청은 경찰과 같은 청사를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같이 쓰지않고 있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청사를 같이쓰고 있는 지방에서는 그 경찰국장이면 경찰국장이 사무연락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를 달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다지 사무연락이 線密히 되지않고 지휘감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찰이 성능을 달리해서 마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있고 그는 입장을 방대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찰이 지나친 또는 월권적인 처사는 우리가 때때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아마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수없이 지뺏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집행하려면 이것은 하나의 경찰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일반국민은 그야말로 경찰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찰을 본의원이 제안을 할 때에는 이 서울특별시의 경찰국을 어느 방법으로 이 시청의 본청에다 합병을 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해봤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실현을 볼때에 경찰은 본분의 사명을 이 탈해서 대대로 편영적인 그러한 경찰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왕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찰이 그러한 일당일파에서 오는 정당의 도구화되는 것을 다소나마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든 것입니다.

경찰을 시청 본청사와 병합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형편을 보아서 서울특별시청사로 경찰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병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면까지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략을 말씀들인다고 할것 같으면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본청 이 동쪽에 있는 공지를 매수하고 의사당을 신축하려고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시다마는 하나의 훌륭한 설계가 완성되어 가지고 지금 전야에 있는 것을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의사당 설계의 내용을 본다면 의사당은 의사당으로서 그야말로 현대문물은 갖춘 훌륭한 설계가 되어있고 이것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나의 적지 않은 공헌을 볼것입니다.

그러나 일방 생각해 볼때에 과연 우리특별시가 그러한 미관상 그러한 이유로서 불필요한 그러한 사치스러운 건물을 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설계의 내용을 달리해서 의사당으로도 쓸 수 있고 경찰국청사로서도 병합해 쓸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의 내용은 변경시킨다고 한다면 일거양득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사와 똑같은 「빨딩」을 뺄려 짓는다고 하면 한쪽으로 의사당도 쓸수 있고 경찰국도 쓸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적에 현재경찰국의 세대 그러한 방대한 규모와 그러한 큰 세대가 어떻게 이 좁은 자리에 와서 병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혹 기우를 하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점은..... 차차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지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오늘날 치안상태가 차차 호전됨에 따라서 경찰의 기구개혁이 되고 간소화되고 세대가 잘 되지않을까 이렇게 장래가 신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후라고 하면 현재상태로 보아서 현재의 경찰 그러한 세대와 그러한 규모 이것을 대폭 축소해도 되지않을까 그러면 그 대폭 축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볼적에 경찰청사가 본청사와 합병을 해도 그다지 협소하고 군색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의 낙관적인 희망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현재와 같은 경찰의 무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국민을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 염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경찰이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치안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좀더 인원을 축소해서 세대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낱날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것과 아울러서 똑같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은 이런 면에 생각을 해서 종래에 계획했던 의사당 신축에 이러한 것을 달려한다면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의원이 잘 알고 또 이것이 약간 실관성이 허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것은 약간 기우에 마지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므로서 당무자에 하나의 연구재료가 될것이고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연구재료가 될것이고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개기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그 당무자들은 공시 연구할 기회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데에서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관될 수 있으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본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제안을 내놓고 여러분의 찬성을 바라면서 여러분이 너무도 꿈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가지신 의원 동지도 많이 계실줄 알고 사실상 이렇게 실관성이 용이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이런점을 우리는 의회의 총의로서 우리가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당무자들

의 하나의 연구자료를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금 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끝으로 의원동지 여러분이 가사 이것이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지만도 하나 이것이 의회의 총의로서 결의가 된다고 하면은 좀더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데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바는 경찰국장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리 관계상 마음대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알기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럴 것입니다.

아들도 내집인데 같이 데리고 있을적에 아들이 아들 구실을 할수 있고 아버지도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살림을 내놓고는 감독이 충분히 가지 못하여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울특별시장 산하에 있는 하나의 국이 독립을 해서 독자적 태도로 하는 것보다도 시장 산하 가까운 데에 두어서 상호 연락하는데 빨라지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취할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양찰하시고 우리 장래에 여러가지를 잘 고찰하셔서 이것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순 의원; 제안자 조영석의원의 지금 제안설명 들었고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1, 2년후에 실현이 될지 말지 혹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인

데 긴급동의안이라는 것은 당장 필요한데 있어서 긴급동의안으로 제안이 될줄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의원 여러분들의 정원수에 구비된 조건에 제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하겠습니다. 마는 경찰관 청사에 대해서는 조영석의원이 세세히 연구를 한것 같아요.

그러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관청의 문제와 달라서 순전한 사무관청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는 즉 말하자면 군대의 훈련과 같은 경찰은 경찰로서 훈련을 하는것이 옳시다.

경찰이 훈련하는데 한사람에 평균 몇평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선진국가나…… 그런 것은 구태어 말씀 안하겠습니다. 마는 청사라 서울시 의사당과 같이 합쳐서 설계를 해서 한곳에 있으면 꼭 편리하리라 말씀이 있었지만은 서울의 도심지요 우리 서울시 근처에 그만한 훈련장이나 도련장을 둘래야 둘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것이 현재 경찰의 청사가 건평이 2천8백평입니다.

그러한 건물을 지으려면 서울시 재산으로서도 당장 빈민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때에 있어서 경찰서 건물을 일조일석에 건립에 실현성을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현상론을 말하면 한강 철각도 없애고 지하 지도로도 파고 하면 여간 편리할 것입니까……

장래에 부닥칠 문제로 이 문제는 앞으로 참고할 문제로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 두기로 하고 다음 긴급한 문제…… 의제에 사정된 여러가지 의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는 조영석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으므로써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서울시 경찰국과 서울시청이 합치게 되는것 저는 그 취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이로서 결론짓고 다음 의사진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의사진행 말씀합니다.

○장의순 의원; 방금 조영석의원께서 제안해주신 그 진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경찰국은 시장 산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시장 말 듣지않고 시와 경찰국과의 사이가 과히 원만히 지나지 못한다.

여러가지 한 청사에 있을것 같으면 여러면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가 해서 나왔든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다르다고 해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는 운영에 명예가 있는 것이요.

또 한가지는 현재 같은 국립경찰서는 도저히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방경찰을 지방비로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선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로서 지방경찰을 확립하고 모든 인사문제를 갖다가 시장이 딱 쥐고 함께 할것 같으면 서울시내 아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경찰역할은 100퍼센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아직 시기가 있는 것이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말고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의하신 분들이 찬성하시면 저는 그 제안을 철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상 논의할것 없이 이것을 종결하고 딱 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찬성이요」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장의순의원의 동의찬성으로서 성립되었읍
니다.

이의없으면 장의순의원동의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제3 서울특별시유재산조례중 개
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5분간정회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5.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재무국장; 시유재산조례중 제1조 제2항을 시의회에서 수
정을 해서 통과를 해서 3월 5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해 왔읍니
다.

여기에 대해서 재의이유로서 저희들이 생각한 점을 말씀드
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의회에 권한이라고 하는 가운데
에 기본재산등의 설치와 관리와 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본재산의 관리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조문을 본다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에 있어서는 기본재산도 있고 보통 재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9조를 보면 기본재산의 관리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 같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3조에 본다면 여기에는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1, 2, 3에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으로 말한다면 19조에는 의회의 議失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리권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일견 본다면 모순된 것같이 생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법이 근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직능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주의로 되어가지고 있느냐 혹은 고시주의가 아니고 법정주의로 되어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볼때에 지방자치법은 어디까지나 법정주의로 저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는 기타법령에 의한 그 권한이라고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 결의되기만 하면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 볼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한 사무한계 또한 의회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직무한계가 비슷하게 저희들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재산관리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

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집행기관에 행정사무라고 저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조례를 규정해주신 1조2항에 의거하여 예산조례에 규정한 의회에 의결을 요한다는 것을 삭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이 취지입니다 마는 법견해에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그 사유지에 평수라고 하는 것이 390여평이 되는 것이고 건수만 하더라도 이것이 수만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그 대여를 의회에서 결의를 할 이런 번잡한 사무를 볼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도저히 의회에서 이것을 대여한다. 승인한다는 것을 곤란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 기본재산 또는 관리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103조에 있는 관리하고 글자는 같습니다 마는 103조에는 구체적인 매건에 대한 대부하든지 딱 관리 사무를 규정한 것이고 19조 5항에 있는 기본재산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금고의 설치라든지 기본재산의 관리라든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개괄적인 관리의 원칙이라든지 관리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의가 법률 또는 대통령에 규정된 것을 제정한 외에 사용료 지방세부담금 가입금…… 비단 현재에 부과징수 사무를 만일 의회 사무로 한다면 일일히 지방의회에 부과징수에 지방의회에서 일일히 결의를 격거야 할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과와 징수라고 하는것은 부과원칙이라든지 징수에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으로 한것을 개

괄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것을 정하는 정도에 끝이는 것이
직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수정해주신 시유재산 규정하고 1조2항에 이
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집행부로서는 부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부의장 이행득; 재정위원회에 심사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박수형의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 의원; 이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테 대해서 또
한 재정위원회가 심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4월 12일자 의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든 것입
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치법 19조에 의거해서 관리에 대해
서는 우리의회가 결의할 수 있다.

또 집행부에서는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한다. 이러한 정도로
말씀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집행부 당국이 한번 더 재고를
해서 행정관청하고 의결기관에 다시 말하면 행정 관청하고
의결 기관하고 다시 말하면 집행기관이 합쳐서 서울특별시라
는 지방자치 단체가 구성되었으니 그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에
서 어떤 범위내에서 일을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일은 모든
행정에 관해서는 의회가 결의한 그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것
입니다.

다시말하면 절름다리 자치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집행부당국이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놓는다는 그 자체는
물론 지금 법률자체가 절름다리가 되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마는 본질적으로 생각할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본질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권한을 침범한다. 의결기관이 어떻게 한다드니…… 자꾸 재의요청을 했다니…… 만일 집행당국이 지금에 와서 민주주의가 바야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판국에 있어서 자꾸 논의하게되면 민주주의 진행에 역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논의할 것 없이 만약 시유재산을 대여해 주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사백사를 그것을 가져다 실이 결의로서 「에이」를 해 주어라 「삐」를 해 주어라. 이런 행위를 하자고 해서 여기 안건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유재산 360여평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여해 주는데 다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으로서 이것을 대여해 주느냐 하는 것을 가져다 이것을 집행신청서를 받으면 이것은 기한을 필해서 종합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는 동의를 한다 이것입니다.

집행부가 대여를 해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신청서를 받아서 이것을 해주라 이런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지나친 월권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말고 민주주의 본질을 파악해서 만일 집행당국이 말씀하신 그것이 말씀자체가 선의로 생각한다면 별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마는 그것을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례 제1조에 시유재산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본 조례에 의한다.

전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시는 국고는 법에 의한다.

거기에 부처서 본조례에 규정한 재산을 관리 및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을 첨부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재의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전자에서도 여기에 누누히 논의했었고 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든지 민권을 신장하는 본연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의결되어 가지고 여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조영석 의원; 이 문제가 지난 4월에 논의되었을적에 본인은 약간 반대의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본의원은 재의요구해온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요전에 지방자치법 19조 5항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이러한 조문에다가 이론적 근거를 두고 시유재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보았다고 이렇게 본인은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9조 5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단지 이법에 의해서 원칙만 의회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이러는데 대해서 그 원칙만을 결정을 해준것이고 건건에 대해서도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의 조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얘기하면 10평되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값」이라는 사람한테 대부할적에 「값」이라는 사람이 10평 시유지 대부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부해 주고 또 20평되는 시유재산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부할 적에도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대부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 건건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의회가 집행하는 것이지 결의를 하는 것이 본의원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시유재산 처리법에 의거해서 관리는 어떤 원칙만 관리를 해라. 가령 시유재산을 대부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 어떠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을 부처서 어떠한 절차로 대부해 주어야 된다는 그 원칙만을 조례로서 정해 줄것이지 그 건에 대해서 집행은 집행부가 할것이지 의회가 그 일일히 아니라고 본의원은 이런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의원의 의사가 통과 안될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본의원은 이런 이론에 치중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이론에 치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하나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가령 권위를 확장한다든지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아서 법의 정신을 비추어서 의회가 이렇게 해서 건건을 승인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에 위배되지않나 본의원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제윤의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김제윤 의원; 반대입니다.

지금 조영석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그 해석하는 범위가 조영석의원의 의도를 갖다가 법적이론에 자의로 해석하는 것에 아연실색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애당초에 본의원에 제안되어서 한개의 시

유재산을 대여하는데 있어서는 애당초 의회에 속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연후에 대여해야 된다는 이러한 골자에 입각해 가지고 시유재산에 대한 하나의 조례를 만든 것이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나 이렇게 말할것 같으면 당초에 말씀해 드린것이 상기되는 바가 있습니다 마는 대체로다가 시유재산을 둘러싸 가지고 모당에 있는 권력기관이나 혹은 상당한 어떠한 특권층에 있는 사람은 순전히 시유재산 이것을 둘러싸 가지고 한개의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歷然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조영석의원 지난 의원 구성 직후 바로 열었던 시의회에서 시정감사에 나타난 용두동의 경우 기타 시유지에 있어서 상당한 기만평의 땅을 개인이 대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공의 시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득을 얻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한개의 집을 지어서 팔아 먹는 사례가 왕왕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집행당국에 맡겨 두었다가는 안되겠다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웁소」하느이 있음)

나는 그당시 지적인 바 있습니다.

내무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은 그들의 면목은 특권자에게 그저 내걸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유지 대부분을 요청해온데 대해서 전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결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내무국장도 시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부시장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개의 사무 체계상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의회의 전체 공기를 보나 그것은 도저히 재의를 요청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점은 항상 우리가 유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이종구위원의 긴급동의안으로 시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조사까지 나간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찰라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조영석의원은 집행부에 일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재의 요청을 반대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홍순우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정하실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주장하는 것에 생각하건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도 지방자치법 제19조 5항을 갖다가 열거하고 또한 103조 3항을 갖다가 열거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조영석의원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이론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선례적으로 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결국 지방자치법 제19조5항이랄지 또는 7항이랄지 이런것을 볼것 같으면 기본재산권 또는 처분에 관한 것 7항에 의할 것 같으면 공지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재산국장 말씀은 5호에 의하면 기본 재산 이외의 것을 갖다가 대여하는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소용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지방자치법 103조에 의할 것 같으면 3조2항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이것이 시장권한에 있지 않느냐는 이것 얘기입니다.

여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갈라져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아까 재정국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법정주의보다가 소위 말하자면 제한주의로다가 해석을 해야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본의원의 소견으로다가는 그렇게 지방자치법을 해석한다고 할것 같으면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할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회사에서 생활현상으로 말할것 같으면 한두가지가 아니고 또 변화무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변화무상한 사회현상을 처리해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이 법정주의 확일주의로다가 한다는 것은 어디인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할것 같으면 재무국장 말씀대로 법정주의로만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예산집행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하등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떠서 집행을 못하고 쳐다보아야 할 일이 지 어째서 집행을 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자치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저히 법정확일주의로다가 나가가지고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다가는 무엇이나 할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19조 이외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다가 제9조가 있고 또 읍이 시가 될적에나 읍으로 될적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결을 얻어야 할것과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는 제121조 또는 125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구역외에 공공시설을 하려고 할적에는 그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거나 137조의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138조의 수년 계속을 요하는 경비지급에 있어 의결을 요하는 것이나 139조의 예비비 지출승인문제 기타 일시차입금 특별회계 설치문제 등등 19조이외에 모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방자치법 19조이외에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사항이외에 것은 의회가 의결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할수 없지 않느냐고 법정주의로 나간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는데 그외에는 의회의 동의없이 그대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결국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하나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일일히 여기에 정해놓은 것을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개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꼭 그렇게밖에 할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열거한 그 의회의 의결사항이후에도 또한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 것도 즉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도 좋고 의결을 얻지 않아도 좋다할 경우에도 그때에 만일 지방의회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의결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받아야 하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얘기

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지방자치법 제19조5항에는 결국 기본 재산 또는 積立金穀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이것만은 현정에 놓았지마는 기타 재산에 대한 대여에 대해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덜러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없는 것이예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 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할것 같으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결의 구속력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지방자치법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부시장에서 잘 해석을 가지실줄 알고 이러한 방면으로다가 해석하실 줄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김제윤의원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대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유재산처리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유재산처리문제라고 하는데에 있어서 좀 의회로서 잘 좀 알아보자는데에서 시유재산대여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것을 투입했든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대여요청이 들어왔을때에 법정주의로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 한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단 의회에서 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내에서 어떠한 의결사항을 제정한다고 할것 같으면 거기에 구속력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입니다.」 하는이 있음)

○김수길 의원; 의사진행상 한마디 앓할수 없게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취득재의 요구의건이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해서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째서 이것이 재의요구가 나왔느냐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한 의사 진행상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해서 한마디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청한 것은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해서 냈는데 그것을 본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우리가 시유재산은 19조 5항 및 6항에 규정된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의 설치 및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을 시의원의 의결을 요한다는 이런 것이 아마 집행부 측으로 보아서는 시의회의 월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우리의회가 주장하는 제19조의 5항 및 제 6항 또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103조나 이런것을 볼때에 피차가 법적으로 어떠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집행부가 요구하는 바로 일리가 있는 것이고 주장하는바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김제윤의원이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바와 같이 특권계급이니 특수층에서 시유재산을 대여해준다.

그것은 즉 대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소유가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재무국장실에 들어가 본다면 특권층이 시유재산으로 말미암아 시장에게 들어가 본다면 특권층이 시

유재산으로 말미아마 장시간에 걸친 사적인 고충을 우리는
알어가지고 시의회가…….

우리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서 그 집행부의 고충을
덜어주자는 그야말로 상부상조하는 성스러운 생각에서 결의
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회가 월권적인 행
사를 하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어디까지나 명랑하
고 상부상조하는 집행부측으로서는 이것을 선의적으로 또한
명랑한 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결의했으니 만큼 그것을 양해
해 주시고 예를 본다면 핑계가 좋아요.

특권층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사유재산을 대여해 달라고 부
탁했을적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는 핑계대기도 좋다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집행부로 하여금 널리 양해해 주시고 취소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여러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해 주셨습니
다.

현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 대소를 막론하고 머리를 고쳐
야 겠습니다.

시유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토지소유의 연혁을
쳐들어 본다면 과거에 왜정시대에 있어서 세부 측량을 할때
어긋하게 국유지 또는 관유지로만이 되었든 것입니다.

현재의 시유지 국유지가 소유의 연고가 없으나 볼 때 그렇
지 않은 것입니다.

다 연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과연 민주정치가 수행되는 민주주의 대의
기관에 있어서 그야말로 민의에 거슬리는 관유지를 대부 혹

은 양여를 하는데 있어서 관사가 과거에 관치하는 두뇌로서
아까 김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권력층이나 고위층이 퇴직하
거나 하면 그것을 교묘한 수단으로서 사유화한 실례가 많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바와 같이 우이동에 있는 시유림을 김태선씨
가 대여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어떤 여자가 먼저 보육원을 경영하는 여자
가 먼저 대여를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태선씨가
재대부를 받음으로서 형사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폐단이 한두번이 아니며 자유당소속 모의원도 땅을
얻어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
다.

그러한 폐단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시유지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기회균등을 줄 수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3월 5일 의결
된 안대로 해줌으로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해석합니다.

장차에 이 시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적절히 처분되
어야 할것입니다.

서울시에 영업적 단체가 아닌 이상 어찌 시장이나 지낸 사
람에게만 광범위한 대지를 대여해줄 필요가 어데있는가.

관유지요 시유지요 하는 것은 과거의 악현상이 정치의 잔
재라고 생각합니다.

(「성안해 주십시오.」 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찬부안이기 때문에…… 김주홍위원 말씀하
십시오.

○김주홍 의원; 여러분이 토론종결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니 우리들이 또 하는바가 여기에 조례안에 표현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있고 우리들이 뜻하는 바가 집행부에서 나간다면 그러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몇마디 들입니다.

확실히 아까 홍순우 조영석의원 두분이 법문해석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니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19조에 대한 기본재산에 대한 적립금과 금곡에 관한 설치와 처분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치법 제103조와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 재무국장께서 그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괄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개괄적이라는 말은 是소하니 추상적이라는 말은 시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이 아니냐 하니 그것도 개괄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진찰할때 얼마 그것을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계산이 나오느니 만큼 거기에 따라서 다음해에 어떠한 실적이라는 것까지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재산에 관해서 수익을 위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위한 재산이라는 것은 기본재산에 수입을 가지고 볼수 있습니다.

수익을 중대하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에 있어서 우리가 수입을 정확히 합리적으로 거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례 제1조에 재산의 관리와 대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의도도 여기에 있는줄 압니다.

기본재산으로부터의 수입을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수입을 가져 오려면 시의회가 관심 안가질수 없는 문제인줄 압니다.

물론 재무국장이나 시당국은 조례 입조부터 15조까지가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생각하고 대부는 6조로부터 15조까지에 정해 있으니까 여기에 준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1건 1건을 갖다가 결의받음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면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방대한 재산을 일일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는다는 것은 사무처리상 의회의 운영상 지대한 난관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가 그러한 해석적인 또는 첨가적인 조례를 낸것은 이 기본재산의 수입이 중대하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6조부터 15조까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시의회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실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수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그것이 아마 15조 규정으로서 대어나 관리에 대한 규정인줄 압니다.

규정과 관리가 사실상 다른 사소한 우리 시유재산이나 수수료 사용료 그러한데에 조례로서 정한데 비할것 같으면 이 규정이야말로 조례화 할만한 것이 아닐가 합니다.

이 규정에서 전부 다 조례로서 내놓만한 것은 아니나 중요한 사항은 재산조례에다가 첨가해서 개의안을 만든다면 집행부에서도 사무가 간소화되고 의회에서도 사전에 다 알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정확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납득

이 같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유의한다면 과히 걱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 개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유재산에 대한 수익을 포착할 수 없으니 그 점을 양해한다면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성안합시다.」하느이 있음)

○김규원 의원; 김규원이 올시다.

시간이 너무 가는데 다시 말씀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법이론 이라는 것은 벌써 다른 의원들이 말씀했으니까 법이론을 떠나서 상식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과 법률과는 거리가 멀지않다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제윤의원이 실례를 들었는데 나는 대동빠스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대동빠스가 가격으로 치면 적어도 억대이상 되는것을 무료로 빌려 주어 쓰고 있으며 성북구 용두동에 부의장 명의로 대여받은 대지에다 집을 지어서 팔어 먹는 그러한 처리를 하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냥 방임하여 내벌여 둘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다 결단난 뒤에 일이 잘못된 뒤에 다시 바꾸어 말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 약방문 내리는 말이므로…… 아까 번잡이라고 하나 그러면 시의 금고조례등은 그것도 번잡해서 나왔는가.

중요한 재산을 실지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부득이 해주어야 한다.

해주지 않는다면 파면당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인가?

대동빠스의 제2, 3, 5의 예가 았나왔다고 누가 호언하겠습니까.

법이론으로 보다도 실지로 왕왕 실패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잘못된 것을 놔두고야 어찌되겠습니까. 관리의 핵심은 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실지로 우리가 서울시민의 재산을 잘 관리시켜야 하는데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된 뒤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얘기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양찰하고 이점은 다른 문제로 매사가 그런일이 있었기에 얘기하는 것이지 체면이나 채우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성안하세요.」하느이 있음)

○방동석 의원; 집행부가 재의요청을 하게 되기까지의 사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면을 심심히 분만해야 되기 때문에 재의요청에 대야 되기 때문에 재의요청에 대한 사정이 법적으로 보아서 근거가 있는상 싶습니다.

실지수행면에 있어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행부의 재의요청에 찬성발언하려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상 자기의 이론을 주로해서 법이 정하는바 법의 범주 안에서 만이 각자가 의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의요청에 대해서 각자 여러의원들이 발언한 논지를 듣건대 발언하는 취지에 있어서 집행부가 하는데 있어서 잘

못 되었다는 그저 한것까지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구 앉어서는 안될뿐 아니라 간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방향에 통일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여러의원들이 말씀하는 발언의 취지와는 전연 다른 취지로 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의 사명과 자격은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열두가지의 권한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섯번째에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두가지의 직무 가운데에 5항은 왜 말성스러울가 말성이 되어있다 하는것은 과연 법의 범주안에서만 그것을 부르짖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영역과 남의 인격과 그 자체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두는 바입니다.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을 규정 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거름 나아가서 방법을 초월하고 수단을 초월해서 김을 줄것을 박을 주었다 하는등의 시시비는 보다 확장시키고 보다 팽창시키고 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행위까지 실질적으로 간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법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못만들고에 있어 조례가 나간뒤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잘잘못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3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최대의 의무요 권한인 것입니다.

그것을 과대하게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가질수 있는 권한을 초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질수 있는 권한은 조례를 만들거나 없애는 권한 예산을 정하는 권한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권한등이 있고 나아가서 회계감사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여된 권한한도내에서만 하라는 것을 생활 신조로 하자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항 의원; 조기항이 올시다.

여러의원 동지들께서 이미 법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찬부양론에 있어서 정확한 또 이론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분의 뒤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제가 어려운 지식도 있는 사람도 아니나..... 사실은 제가 발언요청을 전에 했으나 지금에서야 발언을 하라고 해서 나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의원이 말씀한 말은 빼고 제가 생각하는점 몇가지 말을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안자인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19조 역시 열거주의로서 이상 의회로서는 의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으나 사실은 지방의회 근본현실을 따져볼때 그것만으로도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회만상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몇가지만을 열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국회에서 계획해논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집행기관에만 맡겨놓면 여러가지 실정에 맞지않는 탁상에서만 이론이 전개될까해서 지방의회는 주민사이에서 선출해서 구성된 지방 의회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본건에 관한 이 소위 시유재산 기

본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보다도 역시 의회가 당연히 간섭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상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7조를 보면 총강에는 이 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는 어떤 사무적인 의결이 아니올시다.

계획적인 그러한 것을 정하기만 우리 지방의회는 사무적인 부면에 있어서 역시 조례를 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 국회에서 내놓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그러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역시 그 지방주민의 실정에 따라서 역시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일괄해서 역시 7조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총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나 역시 이것을 동의를 얻어서 체결하라 하는것은……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입법취지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제윤의원 김규원의원 기타 여러의원께서 지금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대여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비로서 이런 폐단도 있으니 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 현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 고로 앞으로 이분들이 집행부에 계신한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은 내일 어떻게 영전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를 떠날수도 알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 우리 고충도 생각하시고 이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장 이 말씀드리지 않고 이상으로…….

(「어떻게해요.」하느이 있음)

(「좋아요.」하느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반환하기로 할까요?

(「그렇게해요.」하느이 있음)

재의에 대해서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말씀도 계시니 재정위원회에서 반환하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부터 삼청까지 있음)

○부의장 이행득; 조기항의원의 동의…… 토론종결하고 재정위원회에 안대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의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느이 많음)

그러면 조기항의원의 동의는 재의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소」하느이 있음)

잠깐 이것 표결하기 전에 집행부 설명을 다시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만들어요.」하느이 있음)

집행부 답변을 지루하시지만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안건이 중요한만큼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직 우리로서 예측하지 못하기 때

문에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점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 19조 6월에 있는 중요재산이 취득처분에 관한건만 있고 관리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5호에 있는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이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기본재산에 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관리가 아니고 개괄적인 관리의 원칙이라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조례를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부동산의 대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이렇게 되면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은 19조 6호에는 관리하고 하는 것이 없을뿐 아니라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19조 5항의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관리가 아니고 개괄적인 관리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말씀드린 것은 실무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것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여러분께서 제가 예측하지 못한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형의원께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반된다 혹은 역행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까 방의원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국가에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한다는 것이 민주주의고 집행부와 의회기관이 직무한계를 달리해서 서로 혼연일체 의회를 받들고 의회가 감독하고 집

행부에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이것을 의회가 감독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지방자치법의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19조내지 19조이후에 있는 혹은 이전에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기에 국한하는 것이지 혹은 명시주의니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견해를 본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요한다고 하는 이 조례를 조문이 저희들은 월권으로 보고 법령에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저희들이 재의를 요청한 것이 민주주의의 역행 내지 배치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점은 견해가 다릅시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집행부를 역행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조금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순우의원과 조기항의원께서 예시주의나 열거주의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로서 홍순우의원께서 예산집행은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는데 실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같은 것은 103조에 황체적으로 규정이 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권한과 의결부의 권한에 월권이라 제기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되 가지고 있는 것을 의결부에서 이것을 하는때에서 물론 권한외입니다.

집행부의 권한도 아니고 의결부의 권한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어떠한 의결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게 관계가 되는 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떤 의결이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는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되 가지고

있는 그 이외에 의결도 할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의 권한에 속한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데 불과 합니다.

그리고 김주홍의원께서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 있으나 이것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14조에 되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적당하게 규정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위반된 규정을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새로 규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례에 위반된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조례의 범위내에서 밖에 정할 수 없는 것이예요.

결과에 가서는 부동산 대여에 관해서는 시의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건 혹은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몇의원께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시유재산처리 사무를 잘 했다면 이런 조례를 정할 턱이 없다 잘못해서 그렇다…… 그것은 잘못된 점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다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시는 것은 자유올시다.

그런데 설령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감독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고 여러가지 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사무취급을 잘못했다고 집행부에서 할 사무를 의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뿐만 아니라 조리상 이것은 맞지않는 얘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음

니다.

○부의장 이행득;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해서 재석의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재의 요구가 가하나 부하냐 하는것은 먼저 가부 묻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한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를 묻지않겠습니다.

조기항의원 동의 가하시다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의요구는 재석의원에 3분의2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3분의2이상의 가가 있어야만 될것입니다. 조기항의원의 동의 재석의원 36명중 가28인으로 조5기항의원의 동의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 4에 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 4290년도서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관리국장;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예산서라는 것을 긴급히 각의원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내용은 4288년도 교육세중에서 교육세를 과불 한분이

있어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표에 나타나 있는바와같이 51,545환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자치법에 의해서 사무승인을 얻고져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행득; 문교위원회 심사보고 해주세요.

○문교위원회대리 장의순; 문교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호별세 부가금만 있는데 한꺼번에 내지않고 호별세부과금만 냈는데 또 호별세를 받을적에 한꺼번에 받은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납세자들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각 구청을 통해서 과불했으나 반납해주시요 하는 이의서가 왔습니다.

이것은 원래가 구청에서 부과할때에 전문적 착오로 통지서가 2중으로 나갔다든지 혹은 징수할 때에 잘못해서 먼저 절반을 낸것을 또 전부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더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51,545환을 반납을 해주어야 되겠다.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행득; 다음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주세요.

(의석에서 ○재무위원회대리 박수형;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행득; 다음 예산위원회 심사보고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장 김주홍; 예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의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일전에 있어서 예비비지출액이 51,545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수자상으로 보아서 51,600환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옳시다. 따라서 금년도 교육위원회의 예비비가 4천199만7백환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예비비에서 5만1천6백환을 감하면 예비비가 4천백64만9천백환으로 잔액이 남은것이 옳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이의있습니까?

(「의장」하느이 있음)

말씀하세요.

○홍순우 의원; 교육위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가장 확실하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됨으로서 그대로 승인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이의없습니까?

(「없소」하느이 있음)

그러면 홍순우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동의안이 두번 제출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사일정 끝난 다음에 합시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전부 끝낸 다음에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회의는 어떻게 할까요?

(「두시에 합시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오후 두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산회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부의장 이행득; 재석의원 26명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5분 속개)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5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축소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행정기구축소에관한건의안

○부의장 이행득; 집행부에 연락했는데 꼭 나온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제안설명할까요. 그러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강을순 의원; 금반 서울특별시행정 기구 축소에 관한 건의안에 본의원외 17명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 설명에 있어서 본 의원은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딱 의원들이 여기에 찬동발언하실 분이 많이 있을것 같아서 간단히 제안설명에 임하려고 합니다.

금반 건설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시에 세출면 또는 행정기능 또 인원의 축소 또한 재정의 편성 이런 등등에 있어서 현하 서울시 행정기계를 본다고 할것 같으면 너무도 복잡하고 미묘한 것은 제가 설명안해도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 현재에 행정기구로 볼것 같으면 너무 능률상…… 행정 사무를 취급하는데 너무도 기계가 많음으로 해서 복잡다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현하 재정면으로 본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약 2백억 가까이 봅니다마는 다소나마 세출에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또 인원의 축소에 있어서는 현재에 서울시산하 각구과장을 비롯하여 각 동사무소 직원을 합한 것이 약 서울시에 6천여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행정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면 다소 인원에 대한 축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법에 있어서 최저한도에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여기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는 한 최소한도에 처우를 개선해주는 방도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가지 점을 들어서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축소에 관한 건의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재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할지며 이를 조사 연구 및 기산하기 위한 기관으로 시의회의원과 집행부측 관계자등 15명 한도로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간소화 연구위원회 (가칭)를 구성할 것을 건의함

이유

1. 행정기능이 발휘 현행행정기구는 너무 번잡한 관계로 국원서무를 비롯한 제반사무처리에 지장이 불소함으로 차를 간소화하여 사무처리를 신속히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도록 할 것.

2. 인원의 축소 기구를 간소화함으로서 차에 수부하여 인원도 축소될 것임으로 불필요한 인원을 대량 정리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것.

3. 재정의 절감 기구와 인원을 축소함으로서 인건비 및 수용비가 대폭 절감될 것임으로 현재 파탄 상태에 빠진 시재정을 구제함에 일조가 될 것입니다.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대우개선 서울특별시 행정기

구를 간소화함으로서 절감되는 인건비 수용비등이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특별시산하 지방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생활보장을 시켜줄 것.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간소화연구위원회(가칭) 특성에 있어서는 인원만 15명한도로 하고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절차는 시장에게 일임토록 할것. 이상의 각항을 참작하여 집행부에서는 급속한 시간내로 본 건의안에 대한 실천에 萬遺漏없도록 期必如要 右와 여히 건의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기구장비원칙을 참고로 제가 제안합니다.

내무국에 있어서 인사과 공보과 양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폐지하고 각과의 계를 대폭 축소할 것.

2. 재무국에 있어서 회계 이무 양과를 둔데 국채계등 독립성이 불필요한 계를 대폭 정비 폐습하여 하부 조직을 간소화할 것.

3. 산업국에 있어서 농촌 농지양과를 통합하여 단일 과로 하고 각과의 계를 대폭축소할것. 상공시량, 농무(가칭) 3과로 할 것.

4. 건설국에 있어서 관리 영선과를 통합하고 각과에 계를 대폭축소할 것.

②수도과를 수도사업청(가칭)으로 승격시켜 독립기관으로 본청 각국과 대등한 기구를 만들고 수도관계 각 사업소는 수도사업청에 흡수시킬 것.

5. 사회국에 있어서 위생의약 양과를 통합하여 단일 과로 하고 각과의 계를 대폭 축소할 것.

6. 구청에 있어서 각구청의 부과징수 양과를 통합하여 대폭축소할 것.

7. 동에 있어서 현재 245개동을 대폭 폐합하니 반수 정도로 존치하고 동정을 쇄신하여 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로도 재속할 것.

8. 사업소에 있어서 각사업소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답변토록 기실정에 따라 폐합하고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

9. 결론에 있어서 이상과 여히 정비함으로서 본청에서 5개과가 폐지되고 각구청에서 1과씩 계 9과가 폐지되므로 이에 수반하여 과의 하부조직인 계이하의 기구와 인원도 다수 감소될 것임으로 인건비 수용비등이 절감하여 시재정난을 완화하고 복잡한 사무절차를 피하게 되는 고로 사무능률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각 구청에 있어서 유인물이 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성북구청 성동구청 여기에 또한 출장소가 또한 있습니다. 출장소 3개는 폐지하고 각 구청으로 이관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에 대한 기구축소에 대한 것을 참고의 안으로서 제가 제출한 것임으로 여러 선배의원께서 충분히 참작하시고 건의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거듭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본건 제안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이 행정 기구개폐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건의안이니 건설에 마칠 것이니 그 개폐에 있어서 역시 중앙정부로부터 상급 정부로부터 지방 행정 기구 조직체계라든가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것이고 특히 마지막으로 동폐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구역의 폐합이 옳시다. 이것 역시 건의안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집행부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상부정부에서만 결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무조건 축소하는 것이고 아니고 참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따져 보아서 이만큼 축소해도 능히 현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무량을 처리할 수 있고 현재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넉넉히 징수할 수 있고 현재 원활치 못한 수도 시설에 있어서 수도청과 같이 독립을 시키여 그 음료 같은데 있어서는 참 시민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원활한 수도행정이 즉시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 특히 내무국장님이 당사무자이니 만큼 성의를 다해서 본건의안을 12분 검토를 하셔서 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이라든지 기타 준비연구할 인적 구성을 하실때에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과거에 행정관청에 오래계신이도 많이계시니 이런것을 참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의 상급관청에 있어서 몇몇 사람을 이 위원회에 넣는것이 대단히 이 일을 현실시키는데 대해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일히 강을순의원께서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마는 전체면을 파악해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저는 찬성함으로서 찬성발언하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이행득; 신사회의원 말씀하시요.

○신사회 의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축소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강을순의원의 설명을 잘 듣고 전폭적으로 본의원도 찬동하면서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제2절 갔읍니다. 인원의 축소내용을 보면 기구를 간소화함으로서 이에 부수하여 인원도 축소될 것으로 불필요한 인원을 대량 정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인원을 축소시킨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축소시켜야 되는지 현 「티오」 가운데에서 몇명 가량을 보고 있으며 몇명 가량의 불필

요를 직원이 현재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좀 대략 수학적으로
보아본 수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3항에 가서 다시 말하면 기구와 인원을 축소함
으로서 인건비와 건설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현재 과탄상
태에 빠진 시재정면을 구제함에 일절가 될것임…… 얼마만한
직원을 축소시키므로써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되
는지 이것도 또한 과학적으로 뽑아 놓으신 수자가 있으면 말
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확한 수자야 뽑아놓을수 없겠지만 대략 구상하신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넘어가서 상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대우
개선이라고 했는데 위자는 낭독안해도 여러분이 아실줄 알어
서…… 직원을 축소시키고 또한 직원을 축소함으로서 현재
감원안당한 직원에게 대우개선을 해서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만 대우개선을 해줄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장 넘어가서 여기에 건설국 산하인데 수도사업청으
로서 괄호하고 가칭 승격시킨다…… 직원 가운데서 축소해
가지고 축소한것 만으로서 운영해 나갈수가 있는지 없는지
수도사어청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인원이 축소한 만큼 도
리어 증원되지 않는가 하는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박수형 말씀해주세요.

○박수형 의원; 본의원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역시 이것이 하나의 안건으로 나온데까지는 그 내
용이 추상적이고 구성은 상실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재원을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자 말한바와 같이 제안자로서 할말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되지않는고 하니 서울시의 재정이 많다고 해서 국가공무원 내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 있는데 재정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우해 줄수가 없는 것이예요.

지금 재정이 없다해도 여기에 3,180명 내지는 2백명에 달하는 서울시가 요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내지는 지방공무원 임시의원 이분들한테다가 지금 현 급료외에 만환정도씩 준다고 해도 1년에 한 4억환 있으면 이만한 대우개선을 해서 줄수가 있는 것이예요. 2백여억환 예산중에서 이만한 재원을 염출할 수도 있어요. 허지만 이것은 국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더 대우해 줄려고 해야 대우해 줄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준비한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법으로 정하지 않는한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에 있어서 지금 현단계에 있어서 인원을 축소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자로서는 대단히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인원을 축소하는데에 대해서도 역시 제 자신은 찬동안합니다.

이것을 왜 안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시가 특히 수도서울에 있어서 실업자 홍수에 빠져 있는 것이예요. 하물며 우리가 시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이렇다할 대책도 강구안해 가지고 이것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임시 직원 이분들을 우리 손으로 목아지를 잘른다는 것은 사회정책상 문제로나 도의적으로 보아 우리로서는 적어도 제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할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동회에 대해서 245개동에 대하여 이것을 대폭 정비하여 적어도 100 내지 반수정도로 존치하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단히 찬동하는 바예요.

그러나 현재 이 동회의 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민선으로 해 가지고 민선으로서 당선이면 구청장 직속행정기구하에서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하나의 공무원이라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민선공무원이 아니고 임명한 공무원이라고 하게되면 한달후나 두달 후라도 동의 수가 축소되면 축소되는데에 따라서 하나의 행정장관의 명령으로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 동회장 자체가 민선이기 때문에 이 동회의 수를 축소한다고 해도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할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또한 한거름 나가서 각 구청에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합해서 어느 시기에는 부과사무와 징세사무를 보고 있어서 보아 왔는데 오늘날과 같이 서울시에서 국가의 국비부담이니 혹은 시에서 부담능력이 팽창하는 세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역시 분리를 시켜서 계획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다만 기구를 축소한다고 해서 세무과 안에다 이 계를 두었다는 것은 축소의 결과를 상실한 것이고 이러한 면도 심심히 고려되는 것입니다. 수도과를 폐지하고 수도사업청을 만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 수

도과를 폐지하고 수도사업청을 신설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인원을 소요하고 어느 한계내에서는 독립한 청으로서의 수도행정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말미아마서 원칙적으로 기구를 정리하고 인원을 주리고 동회도 줄일까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하나 세부적인 면은 제가 아까 지적한 바와같이 그러한 모순성 역시 내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인 우리로서도 인원수는 얼마며 만약 절감을 한다면 실업자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며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가 공무원을 기구축소를 해서 정리한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다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내의 지방공무원만은 우리시민이 염출한 시비중에서 냅니다마는 이 국가 공무원은 역시 중공에서 급료가 나오는데 만약 그 인원수가 축소되었다고 할것 같으면 그만한 봉급이 오지 않으면 그만이겠지.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더 연구하고 합리화를 기하고 또한 시정의 결과를 맺기 위해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건의안의 이 주문중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찬성하길래 이러한 점을 여러의원께서도 심심히 고려하셔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모순된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길래 제안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김제윤 의원; 본의원이 역시 염원한 것은 이 기구가 번잡하고 가○ 이에 취직을 하고 있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좀 간소한 길을 걸어가지고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거들 도리가 없느냐 하는것은 지금 강을순의원이 본안을 내는 그 동기와 추호도 달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두고 몇마디 이 축소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사실상 어느만큼이나 번잡해서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축소된 인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본의원으로 하여금 연구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여러가지 각도로 보아가지고 중앙에서도 논의된 바고 각 부처를 폐합하고는 축소를 해가지고 이 축소된 그 재원 이것으로 하여금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한 대우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먼저 공무원은 이에 대해가지고 희비곡선이 벌어지는 일이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환영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를 왕왕 귀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그 사태 이 자체를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요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축소된 인원으로 하여금 감원된 인원이 수자와 우리시로서 말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 기구안으로 감원 수○가 수자상으로 나온다든지 몰라그러되 나온 그 수자에 대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여기에 수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가 그 축소되는 인원자체도 우

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응 연구대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도리가 없는 것이예요.

제가 모일간신문을 본지가 불과 2, 3일을 지나지 않았습니까다마는…… 무슨 신문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다마는 예산 편성방법에 있어서 금년도 오히려 중앙에서는 직원을 9천명을 증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9천명을 오히려 증원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내놓고 있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 기구축소안과 9천명이 직원이 된다는 안을 생각할때에 여기에 상반되는 점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하는바 충분한 기구계획이 수반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 도저히 일조일석에 생각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여기에 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본의원은 이 축소를 해가지고 축소한 그 기구로 하여금 축소안의 시행해 내려오는 모-든 시행정면의 여러가지 능률을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백「퍼-센트」효율을 기한다면 축소는 것이 마땅한 조치지만 역효과가 나오고 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진데…… 이 문제는 충분히 심사하고 숙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초래해야만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므로 말미아마 이 안의 내용과 같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조사내지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서 이것을 기구개혁을 혹은 축소하는데 있어서 통일적인 면을 가졌으면 어떻가해서 본의원의 소견과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기향 의원; 지금 강을순의원외 여러분께서 서울시 기구를 폐쇄해 가지고 일편 재정을 절약 일편 절약한 재정으로

하여금 지금 다음 공무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러므로해서 시 행정사무의 능률을 올리는 의도에서 이런 기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연구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연구 위원회에서 실현을 개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찬성합니다.

평소에 강의원은 모든 점을 의사진행에 있어서라든지 모든 발언에 있어서 조리정연하고 좋은 안을 많이 내셔서 많이 투쟁하시는 의원의 한분이시지만은 특히 이런 안을 가지고 나 온데 대해서는 저는 경의를 표해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 수도 행정기관을 욕심 같아서는 더 확충해서 인원을 더 많이 두어 가지고 더 시민의 시정으로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우리서울시 형편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그것이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의원이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강의원이 아까 인원조사를 해보니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임시직원을 합해서 약 6천명 가량 된다고 그러니 그 재원이란 상당한 것이 될줄로 압니다.

공무원 월급에 따라서 역시 소모비 여러가지 수반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올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에 따르는 담세 능력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 수도에 그만큼 담세 능력이 있는 것이니 상관없다 그럴 것입니다 만은 지금 우리 시의 세금 징수사정을 볼것 같으면 지극히 딱한 입장에 있어서 참으로 부끄러울 만큼 징수 사정이 어려울 처지에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납세에 대한 철저한게 그러한 임무를

자각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안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냐 하면 역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사회생활은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사실상 납세에 임무를 충분히 이행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기구만 이렇게 벌려 놓고 인원만 이렇게 확충시켜놓고 과연 이 시민의 납세 능력하고 비교해 볼때에 참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일고를 해보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놓였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강의원은 기구 축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수도 사업청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에 대해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이 다같이 느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나 시민 각자가 수도만을…… 상수도만은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결단코 개혁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 강 의원이 그러한 착안 하셨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극히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 저런점을 생각해서 지금 곧 이것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당국에 건의해서 이것을 실현하겠금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위원회를 두자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연구위원회를 두든지 어떠한 무엇을 두든지간에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인원이란든지 또 세금 들어오는 것과 국가에 있어서는 역시 개인의 사회생활과 달라서 역시 국가고 시민의 담세 능력과 비교하여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어서는 듣건데 임시직원이 상당수 있다고
그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아도 집행당국에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임시직원 이런 분들만은 어떻게라도 정리해서 이
임시직원 이런분들만 어떻게라도 정리해서 이 수지균형을 마
치고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민의 직접복
리를 위해서 이것을 써야 할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결국 시의원의 봉급에 충당할
것 같으면 시설면에 하등의 하는 것이 없게되므로 서울시의
복리를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만 이 시설하기 위한 인
원만으로서만에 그칠 것이요.

여기다가 다른 인원을 두어서는 안될줄 압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그러면 이 실업자를 어떻게 할것이나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특히 여기에 대한 건설사업을
해가지고 인원을 응소해 가지고 실업자 대책을 강구할 것이
지 지방의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니 직원들을 봉급을 주어
서 먹여살리지 말하자면 지방 관청이 실업자의 구제 대책을
위해서라는 것은 안될것이 올시다.

실업자에 대한 것은 다시 다른 방면으로 또한번 연구를 해
서 할것이지 여기에다가 이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
겠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제 의견과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강의원 말씀과 같이 곧 단행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
게든지 연구를 해보자는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강의원 말씀에 찬성하겠습니다.

○박수형 의원; 이제 조기항의원이 나와서 세금을 받어서 서울시민의 마음대로 쓸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실업자 대책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재고할 일이고 하는 알송달송한 말씀을 했는데 그 견해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무원의 대우 개선이라든지 혹은 서울특별시가 처리 운영 하는 한 재정을 유지하게 되자면 이 몇몇의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임시 직원을 정리해 가지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자상으로 보아서 88년도 시예산을 집행하는데 수도과 교육세 일반 세금 전체를 합해서 시민의 시비부담을 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할것 같으면 65억환 가량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국세로 우리 시민한테 부과한 것은 이 65억환에 6배 가까이 되는 6 6 36해서 서울시민한테 45억환의 국세를 부담시켰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공무원이라든지 이 문제를 기구를 축소시켜서 인원을 정리하므로서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시킨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앙정부가 자치행정이 실시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자치행정부가 차지할 수 있는 이 세원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중앙정부로서 서울시에서 부담시킨 액수중에서 한 백억이라든지 80억이라든지 50억이라든지 이런 대국적인 면에서 나가야 되는것이지 여기에서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사람을 정리해 가지고 대우를 개선해 주겠다. 이런 문제는 조기항의원의 말씀과는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또 한거름 나아가서 서울시의회가 이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속수방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

하는 것입니다.

○김제윤 의원; 말씀 안드려도 좋겠지만 사실상 축소안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재정은 서울시행정은 임시직원에게 매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징수원을 안받아와요. 돈 아니받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신사회의원의 생각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라든지 재정면에 과학적인 수자를 여기에다가 표시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도 인원의 축소라든지 재정적인 절감을 하는데에 정확한 수자를 연구해 불려고 했읍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를 기구간 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내지 조사하자는 대에 특히 착안을 했읍니다.

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정확한 수자를 여기에다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대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발언 당시에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얼마를 대우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씀 못드리고 다만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합의가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 내지 국무회의에서 타합만 되면 다소 개선할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원문제에 있어서 인원이 주는 것보다 늘지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과는 필요없는 과가 있고 어느과는 필요없는 과가 있

입니다.

현재 서울국관리과안에 운수계가 있지만 과거 운수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독립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해서 제가 추상적인 수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회예산을 본다고 할것 같으면 일년에 약 6억환 정도 됩니다.

이 그러면 이 수자면 3억환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과히 염려마시고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약간 의제하고 혼동이 되는것 같습니다.

강을순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긴급동의안은 서울시 행정기구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사연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주안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과니 무슨과니 하니까 혼동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우리가 여기에서 할것은 이 서울시 행정조사연구 위원회를 구성할 것 뿐이에요.

그 이외에 것은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을순의원이 제안한 것대로 우리가 결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재청」 「삼청」하는이 있음)

○김주홍 의원; 본의원은 강을순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좀 수정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행정기구축소에 관한 건의안인데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 서울시행정기구관소화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

다.

이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이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들이 희구하는 것은 복지행정을 희구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모든 것이 능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규원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서울특별시 행정개선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도로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목표하는바도 역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한다면 이 분과위원회가 큰 효과를 가져올 줄 압니다.

또 여기에 동행정 문제같은 것이 나왔읍니다마는 역시 동행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동의 자치제같은 것을 여기에 ○구하고 세째로 이런것을 의회에 개탄에 대한 문제 시유재산에 대한 문제 아까도 다른 의미로 많이 논의는 되었읍니다마는 시유재산에 합리적 처리로 말미아마 어떻게 하면 시민의 일반시세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을까 논의의 대상이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사업에 대한 중점적 완급을 가려서 취사선택해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또 민주주의상 발전을 취하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기구간소화 같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기구 간소화가 될는지 기구확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역시 시민에 대한 복지사업 민주화 또 시민의 부담 경감 이러한 방향으로서 또 시행정 연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 집행부 어른들이 여기에 나와서 의견을 말 못함으로 해서 혹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니 역시 행정문제나 시의원이 여기에 가하는 것을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 제안은 여러의원이나 저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발언했읍니다마는 역시 시행정을 담당하고 집행부 여러분들이 시행정에 전통이라든가 또는 그 상부의 지시라든가 또는 각자의 연구로서 지금 많은 성과도 이룬다고 봅니다만도 역시 시민의 직접적인 여러분의…… 그것은 역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여기에 첨가되지 않으면 안될줄로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을 여기에 참가시킨다는 이런것은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대로 했으면 좋겠읍니다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울시 행정개선에 대한 건설안 제목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연구위원회를 서울시 행정개선 연구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여러가지 참고안이라든가 이것은 의견이 구구할 줄 압니다.

그 위원회에서 넉넉히 조정될 수 있고 의견이 구구하기 때문에 연구위원회가 된다고 보아서 여기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약간 수정하는데 있어서는 또는 연구위원회에 명칭을 수정하는데 대해서 그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그러면 김주홍의원에 제목에 대해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김주홍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입니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성안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의있습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순우 의원; 지금 강을순의원외 17의원으로부터 이 행정기구 축소에 관한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행정기구를 축소해서 간소화 시키자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이유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할것 같으면 어떤 제도나 어떤 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안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역할을 하며 그 방향여하에 대해가지고 모든 능률이나 발전에 호소하기 때문에 중대한 의의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행정기구를 볼것 같으면 사회에 복잡다단하다 그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손문이 헌법을 이것을 따라가도 이 감투 저 감투를 만들어서 자기가 모다 차지해 가지고 복잡다단한 이 기구속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소위 간소화해가지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것이 이것이 중앙 정부나 각지방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있고 이 방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제목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간소화 연구위원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고 할것 같으면 지금 서울시에는 5국28과가 있음

니다만은 복지행정을 안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행정을 하지않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하고 있는 것은 복지행정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다기한 이러한 상태를 연출함으로 말미아마 그 행정사무에 능률에 향상 안되고 쓸때없는 재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화 시키자는 것이 중대한 목적이 있는줄 압니다.

이것은 주문 그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간소화 연구위원회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이 과히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될것이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그대로 두고 다음에 개선이라고 하는 것 기준을 낼 필요가 없이 간소화하자는 것은 누구나 복지행정을 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일반인데 국과가 부처가 다양다기하니까 간소화하도록 우리가 인적면으로나 사무행정능률상으로 보나 재원상으로 보나 간소화 하자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주문대로 원안대로 하자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방동석 의원; 본의원은 동의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건의안이 채택이 되면은 집행부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열다섯사람 연구위원회를 선원하게 되는데 이 열다섯사람을 선정하는 기간은 지금 이날부터 한달 이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함께 동의를 성립시켜 줄것을 참가합니다.

그런데 기위 나왔으니 말한마디 참가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연구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구개선

위원회」라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연구위원회를 이렇게 간단히 하면 비단 주문에 나와있는 지금까지의 행정기구를 간단히 줄이든지 늘리든지 그런데 관계가 아니라 「행정연구위원회」라고 이름을 걸어놓으면 서울시 전체 기구이외에 행정기구도 연구자료를 제시하고 연구자료를 받을수가 있게 하는 범위보다도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기구개선이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행정연구위원회」라고 이렇게 동의측에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면 첨가하겠습니다.

(「결국마찬가지요.」하는이 있음)

행정연구 위원회의 열다섯사람을 지금부터 한달 이내에 선임할 것이 이것을 첨가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홍순우의원의 개의에 찬성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홍순우의원의 개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음 김규원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동순 의원; 의석에서 의장표결에 부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만두어요.」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미안합니다. 거듭 두번 찬성발언 하러나와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여러분에게 부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찰국 기구에 있어서 현 그대로 존속이라 썼는데 이것을 현 기구대로 존속이라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그러냐 참고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서가 문제가 됩시다마는 내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만은 불원한 장래에 서울시 지방비로 서울시가 대처 할수 있

는 그 방향으로 연구위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
어가지고 기구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없애면 좋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규원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청소 및 접객영업의 사무관장 임시조치
에 대한 환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9
오물수거 대행요청원서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합치는데 이의없음
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한데 합쳐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을순 의원; 의장! 합칠 수 없는 성질입니
다. 발언권 주세요.)

○부의장 이행득;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조기항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청소 및 접객영
업의 사무관 임시조치에 대한 환원 건의안입니다.

또한 이 8에 있어서는 오물수거 대행원서요청원서건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오물수거에 대한 문제는 청소입니다.

여기에는 접객 영업에 대한 사무관장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한데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치면 혼동합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최인호 의원; 의제자체는 다릅시다라는 본주문을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심의한 결과 보십시오.

이 결과에 있어서 86년 12월 4일부터 당분간 경찰에 이관해서 청소 작업을 실시해온 사실을 보아도 주무관찰국으로부터 주무과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째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본래 건의안이 나온것이 환원하자고 조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이 두가지는 자체의 내용이 다른 것 같으나 전적 내용이 다른것이 아닙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이갑수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의사진행상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데요.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따로 해주어야 됩니다. 이제 조의원께서 내신것 적어도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또는 국회에 건의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분명히 따로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행득; 이갑수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조기향의원 말씀하세요.

8. 청소및接客영업사무관장임시조치에대한환원건의안

○조기향 의원; 의제가 청소 및接客영업 사무관장 임시조치에 대한 환원 건의안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이 청소 사무接客영업에 대한 사무를 경찰국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경찰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에 이 청소사무와接客영업 사무 취급을 경찰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느낀바가 있어서 여러 의원동지의 찬동을 얻어서 지금 이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설치이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 위생사무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관청인 우리 서울시도 역시 이것을 사회국에서 취급해 가지고 담당과인 위생과에서 실전을 해왔던 것인데 4276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843호로서 이것을 임시적으로 내무부로 이관해 가지고 경찰계통을 통해서 이 사무를 관장해라 하는 명령에 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286년 이래로 경찰국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론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타당치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령이 나오게된 동의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타당하다고 해서 그런것은 아니실줄 생각합니다.

전시하 임시조치로서 이것을 하지 아니치 못할 사회적 그때의 요건이 부합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령이 나오도록 까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싶이 경찰이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사항을 담당했고 보안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민주경찰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극행정 시민의 복지행정에 대한 적극행정을 경찰이 담당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 민주주

의 헌법에 약간 어긋난 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또 경찰은 어디까지나 일반사무를 취급하는 적극행정을 경찰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잘 할수 있겠끔 협조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 및接客영업사무를 경찰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적극행정에 경찰이 직접 참고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저는 이것을 하로속히 개선해야 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사실 이 청소사무나接客영업에 대한 사무는 이것이 위생사무올시다.

위생사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회과학적인 이론만으로 처신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연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위생사무에 대해서는 역시 의학적 세균학적 이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처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게되는 사무올시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전연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적으로 보아서 경찰은 역시 이런점에 대해서는 제2차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하로속히 이것을 환원해야 종래의 보건사회부에서 취급하게 하고 따라서 지방관청인 우리시에서도 사회국에서 취급하게 해야만 이것이 될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만일 경찰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찰에서 4, 5년을 취급해온 사례가 있는데 너무나接客업이라든지 청소사업에 대해서 도리혀 과거 사회국에서 취급하는 것

보다도 능률적이었는데 그러나…… 혹 반문이 있을가 싶어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잠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청소사무부터나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할것 같으면 지금 청소사무는 이 법에 의해서 현재 경찰국 보안과에서 이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청소사무라고 하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물수거가 있는데 분뇨수거가 있는데 분뇨수거로 말할것 같으면 정말로 일언이창지해서 말씀드리면 참으로 한심한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대에 있어서는 약간 체면을 유지할 정도로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주변이 산악지대인데는 적어도 자동차라든지 혹은 길이 협소해서 우마차 같은 것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거차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느정도 체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전연 불고하고 있는 이런곳이 있습니다.

남산주변이라든지 동대문 근처라든지 서대문 마포같은데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전연 오물수거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한통을 질머지고 1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 갈수 없어서 대개 산이나 으슥진데 갔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낮에 날이 좋을때에는 밀렸다가 비가 올때는 흘러나려 가지고 결국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자기집 문전만 보니까 청소가 잘되었다고 하지만 기타 피해자는 저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불결하게 될것 같으면 역시 위생적 견지로 볼적에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 오물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서울시예산을 통과시킬때에 한지계에 60환씩 한통에 대해서 30환으로 분노수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시민에게 징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정은 어떠냐 할것 같으면 대개 그렇지 않은데도 있습니다마는 분노수거하는 인부들이 와서 한지계에 100환도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데도 있고 70환 80환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것이 비일비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은 일일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줄수밖에 없습니다.

또 몰라서 주는 수도 있지만 알고라도 만일 이것을 주지않을 것 같으면 나는 바빠서 못치겠다 이 다음에 오겠다. 이런 뱃짱을 내밀고 있는 처지올시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분노가 넘어가 어떻게 할도리가 없으니까 그저 아저씨 와서 쳐주십시요.

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오불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 올시다.

저는 과장이 있을때에 여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이 상당히 논란한바가 있고 개선책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강경히 요구했는데 딱 부인합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보았을때 우리는 너무나 한심스러운 오늘의 현상이 올시다.

시내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들이고 그저 지극히 한심스러워서 참으로 제 자신이

하기 싫은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라도 우리는 하로속히 이것이 전대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때 그때 실정을 들어서 우리가 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이런 실정이니 이것을 개선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경찰국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고충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강렬한 개선을 요구하지만 지금 사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우리를 선출해준 선출구민들은 첫째 우리시의원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하고 있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시민들은 이 실정을 모르는 양으로 우리한테 청원이 가있다는 것은 의원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물수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실입니다.

자동차가 가는데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번이란든지 부녀들이 오물을 쓰레기를 가지고서 붓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다 못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도루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슬며시 그 거기다가 놓고 올려고 하니 그옆의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거기다가 놓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집의 근처다가 붓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집이 하고 있는 것이지 산악지대는 전연 그러한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창신동에는 여기는 1년이면 열두달 동

안에 어떠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이 오물을 들러쓰게되는 것이고 역시 쓰레기가 하수도에 나와서 수도가 막히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비단 본의원이 살고있는 창신동에 한해 있으면 별 문제입니다.

우리 시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에 하로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심정이 여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접객업자에 대해서 말씀인데…… 접객업자는 요리점 음식점 카바레 차방 「댄스홀」여인숙 목욕이발소 영업 이것이 다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드라도 역시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위생학적 그러한 학식이 없는 사람이래야 만이 여기에 대한 것을 향상시키고 역시 선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생정신이 철저한 양양과 소독기구의 정비라든가의 등등면을 선도할 것인데…….

현재 경찰은 그야말로 기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만 역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명령을 해서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찰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생사상이라든지 이런점에 대해서는 역시 업자들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넣어주고 선도해 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할수 있게끔 이 교양을 주입시키는 것도 역시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지방청의 위생과로 하여금 이런것을 취급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공중위생에 많은 공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하루속히 이것이 개선되야 될것이라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결의받아서 역시 중앙관청에 대해서 우리의 실정이 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속히 법령을 폐기시키고 우리가 전대로 이 사무를 하는 것이 우리시 공중위생에 커다란 공헌이 될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 주문만은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주문 대통령령 제843호에 의한 청소 및接客업의 사무관영에 관한 임시조치령으로서 취하여진 행정조치는 폐지하고 종전에 의하여 환원함」 이러한 조치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으로 지금 이 건의안을 내게된 이 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찬동있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이갑수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 의원; 청소 및接客영업의 사무관장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즉 폐지해야만이 자연적으로 서울시 사회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문제로 우리가 소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으로서 법리화시키는 것이니까 역시 우리 건의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중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특히 시에서 이 사업을 직영함으로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또는 경찰에서 하고 있음으로 어떠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전시하라고 해서 4286년 12월 14일부터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청소뿐만 아니라 요리점 음식점 기타 댄스홀 카바레등의 이 허가문제까지도 결부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위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위생에 관계되는 주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경찰이 직접 간접으로 관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중대한 문제가 각종 영업문제보다도 청소문제만 가지고 본의원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날이갈수록 비교적 잘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정도 전시하라고는 할지언정 민심이 안정된 이때에 있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임시조치는 폐지하고 당연히 시로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할것 같으면 경찰이 현재 하고 있는데 비교적 잘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 인분문제라든가 진개문제가 심지어 항간에 들리기는 이 인분을 치는 인부자체도 이것은 경찰관보다 더하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아마 높은데나 길이 좁은 깊숙한 골목지역에는 30환이상 가외돈을 주지않으면 안받는다는 하여튼 벳장이 대단히 농후한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일반민중이 생각하기를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이렇게 좋지않은 감정을 왕왕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령 진개 문제만 하더라도 경찰이 사실상 말씀드리자면은 국립경찰이라고 해서 역시 지방행정에 속한 여기에 명령계통에 충분히 통치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함으로서 이런데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령 말단 동민들이나 동장 이러한 분들이 청소를 빨리 보내서 인분을 처달라 하는것은 경찰관이 아니면 속히 싸울수 있으나 경찰관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니 전시아닌 때이니 경찰은 경찰의 사명만으로서 해야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옮겨주어야만 옳은 일이라고 보아서 이 말씀드리는데 바이고 단 이것이 전국에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이렇게 보아지는 까닭으로 해서 실천면은 여하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서울특별시만이 제일 진회 문제나 인분문제가 중요하지 지방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데는 경찰이 취급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 경찰에서도 골치 아파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경찰국에서 사건난것만 보드라도 몇 억이라는 것을 갔다가 집행부가 먹어 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일이나 말이에요.

이것도 일선 서에다가 자동차를 주어서 너이가 고쳐가지고 너희가 해라 이러면 집행부 먹어도 조금 먹습니다.

전부 중앙에서 쥐고…… 중앙집권이란 것이 참 나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할때 청소는 너희가 해라 여기서부터 모순이에요.

이러한 등등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전시가 아닌 이때를 생각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직접 장관이나 국회의 반영시키는 동시에 국무회의에 이 문제를 건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동시에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서울시민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부탁하면서 한말씀 드립니다.

○김재광 의원; 청소와接客영업의 사무관장 임시조처에 대한 환원 건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자리에서 이 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나쁘다고는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법률을 향유하는 위정자로 하여금 선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이 문제가 야기되는 이마당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지방관청의 행정법이라든지 그외에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제안이유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까지 하나에 권리화 해가지고 행정면에서 담당치 않을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감행한다든지 사실은 충분히 비분에 넘치는 의사 또는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이 허가를 할 수 있고 분야와 또는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분야는 엄연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체계에서 허가를 해서 취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하나의 모순과 비난이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므로 단을 요치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마땅히 하루속히 영 433으로서 폐기함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 치안과 더부러서 행정면에 미치는 경찰의 본래의 사명이 다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차를 운영하고 분노를 일운영하고 그외에接客업자에 대한 취체내지 허가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경찰이 행정을 조

장을 받은 본래의 사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수급치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조기항의원의 8명으로서 제안된 이 주문과 같이 하루속히 이 문제를 사무관서인 중앙 행정부와 더부러서 국무회의에 건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 현실을 보기를 간구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정태희 의원;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 다음가는 큰일은 무엇이나 하면 두로 내보내는 일이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로 본다면 수세식 변수가 있어서 그사람들은 물장치만 잘해논다고 할 것 같으면 변수문제는 일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중에서도 우리 한국으로서는 가난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또 역시 上來로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조상 때부터 수세식 변수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로서는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 옳시다.

그런데 요전에 그 변수문제로 인해서 내가 당한 일이 직접적으로 고충을 받았기에 한마디 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번 비올적입니다.

그때에 우리 동내에서 정의원을 찾아요.

그래서 나가 봤으니 우리 동내에 통 변수를 치지 못하니 급속히 어떻게 해서 처가도록 해주십시오.

시의원으로 나가고보니 변수치는 둔군노릇도 이 사람이 다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네에 사는 동민으로 하여금 속히 적절하게 생활근처에 편리를 나주도록 하라고 이사람 역시 거기에 분주히 댕기면서 주선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위생계에다가 2, 3차 전화를 걸어서 우리 동네에 상원지에서는 분노가 넘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니 까 네 네 하고 대답은 선뜻 선뜻 잘합니다.

그런데 그후에 전화가 오기를 도무지 분노를 안가져가니 정의원 좀 와서 속히 처가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또 경찰국 위생계에다가 얘기를 했드니 대답은 역시 잘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후에 처갔나 하고 알아보았드니 역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큰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소낙비가 오면 하수구에다 버리기 때문에 하류에서는 견딜수가 없고 큰 수라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운영위원회 서기가 정의원 큰일났습니다. 왜그러나 아! 우리동내에서는 변소 때문에 집안에서는 야단이나고 안해가 남편한테 변소를 안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할수없이 경찰서로 달려가서 위생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드니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속히 처가도록 하지요.

하드니 꿩귀먹은 소식입니다.

그러드니 그 이튿날 청소차가 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드니 거기는 언덕이라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물론 높은지대도 큰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치면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것은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시민이 동민이 그런 불편을 당하지 않겠음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원 의원; 이 위생사무라고 할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사무라고 보건행정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생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삼자로 알어볼적에는 간단한 것같지만 사실 해보면 무슨 사무보다도 가장 힘든 사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찰이 위생사무를 취급함으로써 잘 안되기 때문에 조장 행정관청에서 해야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하고 위생행정하고는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당연히 지방관청에서 취급하게 될것이고 이것을 경찰이 취급하게 된것은 제가 알기에는 시국이 혼란하고 질서가 없는 그대에 대통령령 임시조치로 경찰에서 해야된다 아마 이러한 분부로 그랬으리라고 믿는 바이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전국민으로 볼적에 혼란한 것이 없어진 이마당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건사회부 장관이 이것을 취급해서 원활하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민주정치인 만큼 여론정치인 만큼 일반대책이 갈망하는 것은 조장 행정관청에서 위생사무를 취급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체적인 의견이올시다.

접객업자의 허가를 경찰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일반대중의 관심은 무엇이나 하면 경찰은 취체기관이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무는 종전대로 환원해서 명명백백히 민주행정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요청하며 찬성하는 바입니다.

니다.

○김제윤 의원; 경찰에서 위생사무를 취급하는데 특히 이 분뇨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경찰이 취급하니까 잘되 나간다고 하지만 나는 보안과장께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에 똥을 퍼가는데 그 시간을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나는 왜그러냐 하면 아침공기가 대단히 좋아서 일찍 일어나 가지고 무엇을 좀 할려면 소리를 갑자기 냅니다.

이것은 무엇이나 하면 똥 퍼간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정신 교란을 시켜서 아무것도 안되니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시정할 수 없는가? 그리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건의안은 우리가 채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것을 채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고로 이것을 종결시키기 곤란하니까 그것은 다른 의원께서 해주시고…….

○문학우 의원; 이게 청소작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소를 경찰에서 장악하기 때문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인부 내지 청소차 운전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이 쓰레기차가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부녀들이 쓰레기를 들고와 쓰레기차에 나온것은 거기에는 양은대야도 좋은 기물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를 담은 그것을 그저 그냥 집어던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청소인부라든가 운전수라든가 눈을 뜨고 달려드는 것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 높은 지대에 분뇨차가 올라가지 않았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신문로2가 산1번지입니다.

지역적으로 정착성이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종로서에다가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차를 배치하도록 말을 했읍니다마는 차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반 변소가 넘으니까 공지에다 분노를 파다가 매몰한다는 것이며 똥을 밤중에 하수도에 버립니다.

높은 지대에 될수 있는대로 배차하도록…… 분노를 수거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높은지대에 올라가는 것은 고사해 놓고 한지계에 60환식하는 것을 미리 흥정을 하면 모르지만 퍼놓고서 100환내라 이런다 말입니다.

단속을 취해야 하겠읍니다.

또 종로구 관내에서 수하차를 25개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때 취지는 대단히 좋았어요.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손구루마가 들어가서…… 한대에 2만5천환식 가지고 25대를 만들었읍니다. 종로구민들이 했읍니다.

처음에 몇일동안에 쓰레기를 처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루마」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소위 부유층에 가서 청소작업한다 그말이에요.

비용은 주로 구민의 담당인데 작업을 모모 특권층에 가서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좁은 골목에다 이용할려고 서에서 이런 좋은 방안을 착안했으면 유효적절하게 이용해 보아야 할터인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 누차 많이 보았읍니다.

관하 서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시정해야 되겠고 김제윤의원이 말씀했는데 분노차가 새벽에 다니기 때문에 대단히 시

끄럽습니다.

새벽 4시에 와르르 닥쳐가지고 변소치라는 소리가 마치 새벽에 ○부르는 소리같습니다.

시정해야 할것입니다.

대통령 863조에 의해서 위생사무가 본질적으로 환원될때까지 경찰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될것이니까 환원되기까지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또 한가지 자동차 수리비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인데 각 소단위로 운영해 줄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행득; 의원 여러분께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무관장 임시조치에 대한 환원 건의안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실 분은 여기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길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수길 의원; 지금 조기항의원께서 제안하신 설명을 잘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청소에 대해서 외국과의 비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회의 본인이 동남아 일대를 순시한바 있기에 본 의원이 외국에 시행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유심히 본바 있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았읍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예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현재의 「싸이공」으로 말한다면 그나라 민도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수준이 낮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쩌냐 할 것 같으면 마침 가정부인네들이 집안에 쓰레기를 내놓기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그것을 실어주고 5분후에나 10분후에 「빠게스」나 그릇을 들여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제나 우리나라는 개선될 것인가를 저는 느낀바 있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그런 말씀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 및接客 영업에 대한 사무관장을 임시조치로 대통령령에 의한 것을 사회국 위생과에 일임하자는 그 의의는 물론 경찰관 자신들이 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않고 있다는 것과 또한 직책적으로 보아서 의당히 보건부 사회과에서 취급할 성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로 오늘이 안건이 나왔으라고 믿습시다마는 더 나가서 과연 오늘날 경찰행정 특히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이 오늘날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을 보지않을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요며칠전에 경찰국 위생계 부정사정이 약 1천만환이 부정사건입니다.

적어도 지난 예산심의때 있어서 경찰국 전에 보건과장이었던 현범인으로서 구속되어 있는 단상에 수차에 나와서 시의 청소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니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약 2억 가량이 더 필요하니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서울시의회에서 재정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결해 주었든바가 있습니다.

통과후 듣고보니 뜻밖에 이것을 한입에 쏙 삼켜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接客영업에 있어서 경찰은 오늘날까지 무엇을 했는가 또 한번 더듬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라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야말로 그네들이 부르짖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경찰이요 시민의 공복인 경찰이 이용소에 가서는 위생계에 있다 해가지고 무료로 이발을 합니다.

또한 조그마한 「하꼬」방 음식점에서 하루 두끼 내지 세끼를 그냥 먹어요. 그래서 오죽해서 죽진 못해서 「하꼬」방 속이나마 사는데 그 사람들이 먹어버리면 이것이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은 선거시에 투표한 것 같은 조그마한 「하꼬」방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귀에걸면 귀거리식의 그야말로 허가를 취소하는 등등의 처사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제잔재주의적인 관료주의를 써온다는 등등 이런 세가지 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않고 있다는 것 또 위생사무가 보건부 사회국에 의당히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 또하나는 경찰이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시민에게 공포성을 준다는 점 이런 등등을 비추어 보아서 이것은 의당히 사회보건과 사회국 위생과가 이것을 의당히 관여할 성질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을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토론종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긴급이요」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조기항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환원하자는 것을 환원하자고 여기에 의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문제만 하더라도 작년도 시정감사할적에 이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심심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말씀이 이것은 상부 관청이나 혹은 대통령령이 해제되면 그때 말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는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령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이接客영업문제만해도 비단 이발소 뿐만아니라 음식점 미용등등의接客영업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관장이 문제도 시사회국 위생과에 넘기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이 하나의 의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냉철한 두뇌로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심심히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하나의 제안자가 그 자체의 심심한 연구도 안하고 덮어놓고 환원결의를 한다는 것은 환원결의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이 해제가 안되었는데 이것이 해제가 될때까지 우리 건의안을 내도 통과안된다 이것이에요.

또 영업권에 대해서 허가권에 대해서 시○보안과가 이것을 관장해서 장악해서 무엇이 나쁘느냐 이 허가권을 시사회국이 취체 관청인 사회국위생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취체 한다든지 하면 김수길의원 말씀대로 조그마한 「하꼬」방 음식점에서 무료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안과에서 하는 것을 환원한다는 것을 해서 그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이 허가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겨우 테두리가 잡혀서 오늘날까지 이래왔는데 이 청소문제라든가 혹은 다시 말하면 똥처가는 것이라든지 오물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서울시민으로서는 어떻게하면 수수료를 조금내고 조속히 그 요망하는 시기 시기에 철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관청이 경찰국이든 보건사회부에서 하건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날에 반대방향으로 이것을 미끼로서 시민한테서 나쁘게 말하면 용돈이나 얻어쓴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자체의 교양문제이지 이 근본문제라고 다르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본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면 이것을 잡고 있다 그것을 우리 시의회의 여론에 부다쳐 가면서 이 문제를 ○고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더퍼놓고 이것을 그렇게 결정만 해놓고는 어떻게 할테요. 그것을 해놓고 이 모든 절차가 해제 안되게되면 어디까지나 해결안된다 그것이에요.

부정한 문제는 하나의 여론으로서 시정하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도감독하면 될것이고 또한 이 문제를 환원하자고 하면 그쪽에서도 담당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당장 건의안을 내놓고 채택해서 건의한다고 하는 이러한 경한 방법을 쓰지말고 이 문제는 이왕 의제로 나와서 여러 의원들께서 심심한 토의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건의하기보다는 차라리 시경에서 2명 시의회측에서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몇명 또 시의회국에…… 얼마만이나 경찰보다 잘 하겠느냐 이런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사회국에서 2명 그래서 한 6인 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 같은 데에서 논해서 이해득실을 명백히 밝힌후에 과연 경찰이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이러 이러한 사유로서 나쁘고 시민의 권리증진에 장애가 간다고 하는 결론에 내린다고 그렇게 하겠고 또 이해득실로 보아서 그렇지 않다고 할것 같으면 그대로도 좋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무작정하고 환원하라는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연구하고 이해득실을 알기 위해서 아까말고 같이 시경에서 2명 보건위원회에서 2명 내지 3명 서울시사회국에서 2명 이런 위원을 내서 여기에 대한 연구로하고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연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 는 동시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강을순 의원; 본의원은 토론종결 동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종결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원칙으로 본다고하면 정부조직법 제15조 내지 23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기적으로 보아서 청소사무 또한 위생사무를 경찰국에서 관장해야 되겠다는 임시조치법에 당시에 전시라 이런 구실을 있었던 것입니다.

엄연히 정부조직법 제23조에 의해가지고 보건행정에 보건사회부 관장은 의무방역 보건위생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도 엄연히 이것이 사회국에서 해야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아가지고 이 문제가 경찰권을 발동해서 하는 기관이 좋지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경찰국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를 전시로 볼수가 있느냐 전시가 아니냐는 이런 점을 보아서 이 건설안을 채택하는데에 있어서

는 다만 채택여부는 여러의원들이 하시게 될 문제이니 다만 이 문제에는 저는 종결동의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강을순의원의 토론종결동의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재청으로서 강을순의원의 토론종결동의 성립되었습니다.
이의있으면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이것 의원에게 충고합니다.

번번히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규칙 29조 토론종결동의를 하면 의장은 가부를 묻는 것이예요.

제29조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이렸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물으세요.

그러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벌써 제가 이런 발언을 여러날 합니다마는 토론종결을 해놓고 따로 의사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예요. 의장님께서 특히 29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가부 묻겠습니다.

(「규칙발언입니다.」하는이 있음)

○김동순 의원; 규칙발언 얻었습니다.

강을순의원이 토론종결동의하기전에 본인이 발언을 말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장님으로서는 당연히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 발언자의 발언할 기회를 주시고 토론종결발언을 주셔야지 하는 것입니다.

직권도 규칙위반 해가지고 직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예요.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김재광 의원; 이 토론종결동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찬성 여부를 막론해 놓고 의장은 직각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 제의한 그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더 토론하자고 이것을 부결하면 토론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제의 동의라든가 개의라든가 다른 안건과는 별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동순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만 요다음 동의나 개의 기타 문제로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웁소」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토론종결동의의 가부 묻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이 있음)

거수표결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장을순의원의 토론종결동의는 재석의원 34인중 27로서 가결되었습니다.

○박수형 의원; 이거 대단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는가하니 토론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나 개이가 만나왔을때에 또 일반적인 토론을 하다가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가 할때에 의장의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토론종결동의가 나오기 전에 본의원이 동의를 해서 김동순의원이 찬성이라고 해서 동의가 성립되었는데도 말씀이예요.

이 문제부터 해결안하고 종결 동의를 나왔다고 해서 종결 동의를 가결하고 이거 우습습니다.

문제는 본의원이 동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그것입니다.

시경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청소사업과 위생사무에 대해서 이것을 서울특별시 사회국위생과에 환원하고 있는 그러한 이런 것인데 본의원은 그 제안의원의 의도도 충분히 압니다만 적어도 10년을 두고 해오든 이것을 관리 제도의 변경을 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경찰국으로부터 사회국에 이관되었다고 하면 시민한테도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갈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좀 여기서 조금히 환원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동의했든 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박수형의원의 말씀 역시 토론을 종결한다는 것을 회사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장내소연)

○최인호 의원; 박수형의원은 누구보다도 회의규칙을 잘 충분히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원칙을 떠난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론종결동의를 발의되어서 이것이 찬동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라 회의규칙 29조 의장의 권한을 받고 잘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양부론이 대두되어서 그 이상의 찬부가 나와서 토론이 되고 이 이상 토론이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의장직권으로서 토론종결 시킬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되어 있고 동시에 있어서 아까 김동순의원이 이 토론 결론이 나오기전에 이미 발언

요청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우리의원이 순서를 찾아서 해야 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있고 또한 원칙문제가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나 또는 지방자치법과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분야의 관장 주무국인 사회국에가서 환원시키자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동의가 나오고 여기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개의가 나와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선후를 가리지 않고 후회할 일이 많게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의가 반대라 이것입니다.

본의원은 정식으로 성안을 제의코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시요.」 하는이 있음)

여기에 주안은 그것입니다. 경찰이 위생행정에 왕안을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경찰은 어디까지나 경찰에 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 보건위생행정이라는 것은 금향이 170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국은 보건위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되어있고 또 이대통령령이라 선포된 오늘날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는 단기 4286년 12월14일자로 대통령령 제83조로서 선포된 것이 제 1조를 보면 전시에 청소 및接客영업에 관한 사무를 당분간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경찰계통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 전시하의 당분간이라고 하나 실례를

하나들어서 말씀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을때에 적국의 영토점령을 했을 그 경우에 그저 질서가 유지안되고 이럴 경우에 이것이 비상조치로서 군정이 실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뜻하지 않는 공산괴력에 침범을 당해서 이럴 경우에 질서가 혼란이 되어서 있을 이 마당에 있어서 임시조치로서 전시에 의해서 이 관장사무를 경찰계통에서 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유지되고 혼란이 정돈된 오늘날에 있어서 법이나 자치제나 직제를 환원해서 분야를 분명히 위생행정은 위생행정이 분야된 위생과에서 취급하고 경찰은 여기에 반해서 불안정하고 자신이 보건행정에 비협력을 해서 이 실제에 위반하는 이 행정은 경찰이 취체하고 처단하므로써 경찰행정과 위생행정을 분할해서 나간다면 서울시의 행정이 분명히 되리라는 이런 견지에서 과거를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나고 이렇게 본의원은 단정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건의할 것을 또 건의하기로 전제를 하고 채택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내소연)

○부의장 이행득; 최인호의원의 동의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이 있음)

재청으로서 최인호의원의 동의성립 되었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 문제에는 최인호의원이 올라와서 막연히 건의채택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장관 즉 장이 상부관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이 논의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무가 이관 안되었어요. 하니만큼 이 문제를 건의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내무장관 사회보건부장관 양장

관한테 서울시의회로서 건의를 하는것이 가장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한테 건의를 했댔자 이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방의회의 의도가 여기에 있음으로 여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지방 이 문제가 나왔지 시장한테 안만 해도 소용없는 것이예요.

하니만큼 사회부장관한테 양장관한테 건의하는 것을 첨가합니다.

(장내소연)

(「의장」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찬성발언이십니까?

(「네」하느이 있음)

○김수길 의원; 저는 동의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문제는 아까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박수형 의원께서 경찰이 위생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하등의 잘못이 없다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과연 이사람이 아까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경찰이 잘못이 없느냐 이것은 누구나 160만 시민이 다같이 경찰이 위생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네들의 관료주의적인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또한 조기항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막연하다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무엇이 막연합니까.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또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조직상에 있어서 주무국이 사회국이 동시에 사무를 취

급하고 있다는 것이 응당히 그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 하나로서만 충분히 증명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서 전시하인 까닭에 임시적인 조치 하나로서 한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경찰이 갖지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대한민국 실정이 전시라고 하셨습니까. 박의원의 말씀을 빌린다면 현재도 38선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 박의원말씀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시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응당히 사무가 이관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유에 하나로서 보는 바입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에게만 건의함으로써만 안되는 까닭에 우선 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시장에게도 건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사무이양을 하는것이 그 골자 내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의원들께서는 또 참작하시어 가지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최인호의원의 동의에 개의회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개의회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개의회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조기항의원 소정인원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처리하는 방향에 있어서 각도를 달리해서 결론을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회하는 입장에서 혹 성불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우리 회의에서 토론이라는 것이 참 그야말로 모든 안건에 있어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이 건의안에 있어서 이것을 건

의해 가지고 이 건의안의 목적을 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앞질러 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건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집행부와 집행부와 사이에 하부관청에 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는 문제이예요.

김수길의원계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 조직법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정부 조직법대로 하지않고 대통령이 임시 명령으로 하고 있을때…… 신법은 비법보다 선행됩니다.

법회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서 그때 사회에 혼란상태라든가 여러가지를 보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부 조직법 이후에 명령이 내려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그야말로 완수하지 않고 지금 행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 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아까 김제윤의원계서도 보안과장이 나와있으니까 인분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다 하시고 문학우의원계서도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인분 제거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불충분하고 불비한 것은 여러 의원계서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또 나역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도 느끼고 있을 것이요. 부시장 경찰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특수계급에 있어서는 이러한 곤란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하니 지금 그야말로 급하다고 의제로 오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보다 상부하시…… 중앙정부 그런데에서 성심껏 이러한 방면으로 이것을 해주면 구테어 위생과로 가져오

느니 이것의 경찰에서 한다는 것이 문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자동차 수리비를 갔다가 수역을 유용했다고 이랬읍니다마는 근거있는 신문지상에 발표해 의하면 7천만환인가 억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억대를 보안과장이 먹었다 했지만은 그것은 신문지상이고 이러한 관계로서…….

(장내소연)

이러한 관계로서 이것이 자동차를 중앙에서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을 유용했다고 하지마는 과거에 총독이 구속되었지만은 이사람 자체가 잘못 했드라도 그것은 사람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도 박수형의원에 고견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집행부 사이에 우리건의안이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장 건의할 수 있겠지만 좀더 연구해 가지고 건의함으로써 우리의회의 권위가 서지않을까 이러한 관계로서 박의원 이 얘기한 그와같은 방안으로서 처리하기를 나는 개의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동순의원 개의에 찬성있습니까?

(「찬성이요」하느이 있음)

김동순의원에 개의 찬성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재개의 있습니다?

(「개의에 이의가 있습니다。」하느이 있음)

○이갑수 의원; 개의에 찬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서 손드는 수자가 적어지기를 바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를 찬성합니다. 왜냐 김동순의원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억대가 아니라 7천만환이라…… 7천만환은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를 결부시킬 필요없어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당히 요구대로 해주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차지할 것을 차지도 못하는 시 행정을 우리는 따져야 한다는 것이고 전 서울시 160만의 경찰보다도 일반민중이 잘한다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인 조건이에요.

뭐 이것이 나서서 경찰에 주어야만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김제윤 의원; 이 안건자체에 있어서 박수형의원이 개의를 즉 이것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자 하는 얘기가 이갑수의원이 얘기하는 사회국 소관으로 넘기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기되 더 구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옳은 것입니다. 마는 지금까지 경찰이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불찰이 많았다.

그런고로 해서 이런점을 지적해 가지고 건의하는데에 대한개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자 그 얘기에요.

이갑수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넘기지 말자 하는 것이 근본정신이 아니라는 것만을 의사진행으로 표합니다.

또 지금 여기가 이 정도로 되었으니까 의장이 의사진행하는데 대단히 혼란하다는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 마는 기왕에 성립된 양안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종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표결에 부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한마디 여기에서 아까 김동순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제건에 대해서 얘기가 보안 과장에게다가 질의한 몇가지 항목에 대해가지고 운운한 말씀입니다.

다음 나오는 여덟째 여기에 또 나오는 것으로 믿어가지고

그대로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본의원 잠자코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쯤 아시고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동의에 첨가발언으로 개의첨가발언에 한분이 있습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의사진행이요.」하느이 있음)

○노승환 의원; 여러의원께서 대단히 이 건의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박수형의원 다시한번 고려하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려 둡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의장께 부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의사진행을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한것 같은데 의사진행을 잘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여러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잘 목견하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 만드느냐 여러의원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말이에요.

엄연히 이자리는 시의회의원 47명 전체 160만 시민을 위해서 싸운다는 이자리라고 하던 내가 아까 김수길의원이 전폭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존경하는 박수형 의원의 오늘 이자리에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부족을 느끼는 것이요. 참말로 엉망 진창을 만드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비추어 평상시 존경하는 의원께서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려 두면서 단 한개의

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의장님 직권으로 이 회의 규칙 제29조에다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점을 비추어서 하로속히 일각을 다투시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의원께 재차 말씀을 해서 대단히 오해를 가지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회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재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가져야 하고 우리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점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려드립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김규원 의원; 동의집하고 개의집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혹 절충안이 되지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동의집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개의집에다 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내는 것은 좋다 건의안을 누구한테 내느냐 이 문제는 이 서울특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인 문제니까 서울특별시로 인해서 제주도까지 10도에 문제인데 다행이도 금년에 우리 지방에서 의장단들이 올라와서 여러가지 건의를 많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뜸 이 건의안을 무슨 장관이나 이 대뜸이 낼것이 아니라 요다음에 지방의장단 회합에 내가지고 그 의장단 회합에서 여러사람의 찬성을 얻어서 경위가 되지 않을까해서 지방의장단 차기 회의에 이 문제를 내서 또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내놓기로 동의집에서 받아주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의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요 차기 지방의장단

회합에 서울특별시의회 건의로 내놓도록……

(「개의집에서 받겠습니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개의집에다 첨부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개의집에서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하느이 있음)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동순의원이 개의에 찬성하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최인호의원의 동의에 가하다는분 거수하세요.

(거수표결)

김제윤의원님 문학우 의원의 찬의는 의사일정에 상정된 끝
항목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인호의원의 동의에 재석의원 37명중 가 24로 가결되었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내일은 제헌절이기 때문에 18일날 의회는 오늘 의사일정에
남은 안건을 전부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로 산회하겠습니다.

(17시 15분 산회)